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-76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SCI평가정보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4.3.7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,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
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2항제1호

◦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2항제2호

◦ 개인신용정보,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2항제4호

◦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
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2항제6호, 동법 시행
령 제11조의2제1항제5호